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

2006. 1. 16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1월 3일 · 종로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월 12일
다. 상정일자 : 제15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
제5차(2006. 1. 16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 명 식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1677(2005.12.1)호로 『교남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승인 공고』됨에 따라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의 『교남뉴타운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』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7(2005.2.5)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-도심부)을 변경코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1)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(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-도심부)
 - 도시환경정비에정구역(교남뉴타운)

구 분	면 적 (㎡)	위 치
신 설	200,297.8	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

○ 토지이용계획

구분	지역구분	대상지역	토지이용 유도방향	지정용도
기정	도심주거지역	교남동 일대	도심부에 남아있는 주거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거기능 도입 유도	주거(공동주택), 교육연구/복지, 의료시설, 근린생활
변경	도심주거지역	홍파동, 송월동 일대	도심부에 남아있는 주거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거기능 도입 유도	주거(공동주택), 교육연구/복지, 의료시설, 근린생활
	혼합상업지역	적십자병원 뒤쪽 부지	다양한 상업활동의 유지, 강화	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하되, 주거용도는 주용도에서 제외함

○ 용적률 · 건폐율, 높이 및 층수

구분	지역구분	건폐율	용적률*	건축물최고높이	비고
당초	주거지역	50%	250%	50m이하	- 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사선을 배제, - 기준높이에서 20m 추가하여 지정
	상업지역	60%	600%	70m이하	
*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, 단 최대허용 1,000%					
변경	주거지역	50%	250%이하	50m이하	- 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사선을 배제, - 기준높이에서 20m 추가하여 지정 - 용도지역 일부조정
	상업지역	60%	400~600%	70m이하	
*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, 단 최대허용 1,000%					

3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4. 意見 採擇 : 없음

5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음

6. 審 査 結 果 : 원안 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)